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91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김문수 · 박정현 · 이광희
전현희 · 김남근 · 김우영
박홍배 · 이강일 · 김현정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 위치에 남게 되는 학교시설 및 부지, 즉 이전학교 시설·부지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 실제 교육청에서는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폐교재산과 유사하게 관리·활용하고 있어 이전학교 시설·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폐교 활용 용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특례 조항 등을 통해 활용 용도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재산은 수익계약 특례 대상에 한하여 10년 이내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교재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간 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범위에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하고, 폐교재산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위험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해당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제2조의2·제5조제6항 신설 등).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과”를 “시설·부지와”로, “말한다”를 “말하고,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1의2. “이전학교 시설·부지”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가 이전·재배치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종전 학교(이하 “이전학교”라 한다)의 시설·부지와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폐교재산의 활용 원칙) ① 폐교재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②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폐교가”를 각각 “폐교재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요율, 대부기간”을 “대부요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및 다목 중 “폐교가”를 각각 “폐교재산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10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폐교”를 각각 “폐교·이전학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폐교시설의”를 “폐교재산 시설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1의2. <u>“이전학교 시설·부지”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가 이전·재배치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종전 학교(이하 “이전학교”라 한다)의 시설·부지와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u>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u>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u>	2. ----- ----- ----- <u>시설·부지와-----</u> <u>-----말하고,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한다.</u>
3. ~ 10. (생 략) <u><신 설></u>	3. ~ 10. (현행과 같음) <u>제2조의2(폐교재산의 활용 원칙)</u> <u>① 폐교재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u>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기여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②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시·도-----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
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
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
다.

1. (생 략)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
구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
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
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

1. (현행과 같음)

2. -----폐교재산이-----

3. -----폐교재산이-----

② -----
-----대부요율-----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생략)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2. ~ 6. (생략)

<신설>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폐교재산이-----

다. -----폐교재산이-----

2. ~ 6. (현행과 같음)

⑥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10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
 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
 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
 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
 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
 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 대
 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
 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
 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
 다.

② (생략)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
 양수산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
 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
 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
 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폐교·이전학
교-----

-----폐교·이전학교-----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폐교재산 시설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
---	---